고양시 평생학습 강좌
수강생 준수사항 및 위반행위 조치기준(안)

고양시는 강사와 수강생 모두가 서로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강생 준수사항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기준을 마련한다.

1. 적용 범위

- 본 기준은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강좌의 수업 및 교육활동 전반에 적용한다.
- 강의실 내 수업뿐 아니라 실습, 현장학습, 온라인 수업, 강좌 관련 단체 채팅방 및 커뮤니티 등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된 활동에 적용한다.
- 강사, 수강생 및 교육 관계자는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.

2. 수강생 준수사항

수강생은 원활한 강좌 운영과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가. 수업 질서 및 운영 준수

- 강사의 정당한 수업 진행 및 안내사항 준수
- 반복적인 잡담, 소란, 고의적인 수업 방해 행위 금지
- 다른 수강생의 학습을 방해하거나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
- 정당한 사유 없이 강사의 수업 진행을 반복적으로 방해하거나 강좌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

나. 상호 존중 및 인권 보호

- 폭언, 욕설, 협박, 폭행, 모욕, 괴롭힘, 차별 및 혐오 표현 등 인격권 침해 행위 금지
- 강사 또는 다른 수강생에게 교육과 무관한 사적 만남이나 연락을 반복적으로 강요하는 등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부담을 주는 행위 금지
- 신체접촉이 필요한 활동에서는 교육 목적과 활동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사전 동의를 확인하고, 신체접촉 거부 또는 중단 요청을 존중하여야 함
- 성희롱 및 부적절한 성적 언행 금지
 · 성적인 농담, 음담패설, 성적 비하 발언
 · 외모·신체·복장 등에 대한 성적 평가 또는 언급
 · 원하지 않는 성적 질문이나 사생활에 대한 간섭
 · 상대방의 동의 없는 신체접촉
 · 성적인 사진·영상·메시지 등을 보여주거나 전달하는 행위
 · 그 밖에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유발하는 언행

다. 개인정보 및 교육자료 보호

- 강사 및 수강생의 동의 또는 운영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사진·영상 촬영 및 녹음 금지
- 강의자료, 교육영상, 강의 내용 및 수강생 개인정보의 무단 복제·저장·배포 금지
- 강사 및 수강생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, 비방 등 명예훼손 행위 금지
- 강의자료, 교육영상, 강의 내용 및 수강생 개인정보의 무단 복제·저장·배포 금지

라. 기타

- 강좌 운영 및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준수
- 그 밖에 안전하고 원활한 교육활동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금지

3.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기준

위반행위의 내용, 중대성, 반복 여부 및 학습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.

- 1차(경미 또는 최초): 구두 주의 또는 서면 경고
- 2차(반복 또는 중대): 서면 경고 및 일정 기간 수강 제한
- 3차(반복 또는 매우 중대): 해당 강좌 수강 취소 및 향후 강좌 참여 제한 검토

※ 위반행위의 경중 및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치 단계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, 폭력·폭행, 성희롱, 협박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최초 발생 시에도 수강 제한 또는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4. 위반행위 처리 및 보호조치

- 강사, 수강생 및 교육 관계자는 위반행위 발생 시 고양시 또는 강좌 운영 담당자에게 상담이나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.
- 고양시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경우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.
-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신고인 및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,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.
- 성희롱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접촉 방지, 수업 내 분리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검토한다.
- 위반행위로 인해 수업 진행이나 참여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퇴실 요청, 수업 중단, 당사자 분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폭력·폭행, 심각한 소란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전 통보 없이 퇴실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필요시 경찰 등 관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-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전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위반 사실과 조치 사유를 안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. 다만 긴급한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보호조치를 우선 시행할 수 있다.
- 조치 결과와 사유는 당사자에게 안내하며,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 제출 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. 고양시는 제출된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안내한다.
- 신고 또는 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, 협박, 괴롭힘 등 불이익 행위를 금지한다.

5. 개인정보 및 기록자료 관리

- 위반행위 처리 과정에서 수집되는 신고 내용, 대화 기록, 사진·영상 등 관련 자료는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·활용한다.
- 관련 자료는 사건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, 신고인 및 관련 당사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.
- 수집된 자료는 관련 법령 및 기록물 관리기준에 따라 보관·관리하며, 보관기간이 경과한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파기한다.

6. 기타 사항 및 수강생 동의

- 본 기준은 수강 신청 시 수강생에게 사전 안내하고 확인 및 동의를 받는다.
- 본 기준에 따른 수강 제한 및 수강 취소 등 조치는 위반행위의 정도, 사실관계 및 소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양시가 결정한다.
- 수강 제한 및 취소에 따른 학습비 반환 여부는 해당 강좌의 학습비 반환 기준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수강생 확인 및 동의

본인은 고양시 평생학습 강좌 수강생 준수사항 및 위반행위 조치기준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, 강사와 다른 수강생을 존중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학습환경 조성에 협조하겠습니다.
또한 본 기준을 위반한 경우 사실관계 확인 및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동의자 (서명 또는 인)